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74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안마 추가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37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24.
- (3) 회 부 일 : 2025. 2.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그 사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안마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범위에 방문안마(장기요양요원인 안마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재활을 위한 안마 및 안마와 관련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의 범위에 안마사에 의한 재활을 위한 안마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 ----- -----.
1. 재가급여	1.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라. 방문안마: 장기요양요원인 안마사(「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재활을 위한 안마 및 안마와 관련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u> <u>급여</u>
<u>라. ~ 바.</u> (생략)	<u>마. ~ 사.</u>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u>장기요양급여</u>	2. ----- ----- ----- ----- ----- <u>장기요양급여(안마사에 의한 재활을 위한 안마를 포함한다)</u>
3. (생략) ② ~ ⑤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2026. 6. 21.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¹⁾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²⁾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함.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현행법 제23조³⁾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됨.

□ 이 중 ‘기타재가급여’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복지용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방문 재활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 재가급여로서 가정방문 재활지원 서비스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⁴⁾

- 다만,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으로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한 보행, 기구사용운동 보조, 서있기 연습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로서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신체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정방문 재활지원은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
급여에 안마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재활에 필요
한 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
부령)⁵⁾에서는 안마사의 업무를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
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초·중등교
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
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5)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
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
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
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
회장”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
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규모 증가⁶⁾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마를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으로 추가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6조원에서 2034년 40.9조원으로 향후 10년간(2025~2034년) 연평균 10.2%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⁷⁾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25~2034년>

(단위: 조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수 입(A)	17.8	19.3	20.7	22.2	23.9	25.7	27.7	29.8	31.6	33.2
지 출(B)	17.6	19.3	21.4	23.7	26.1	28.7	31.4	34.3	37.7	40.9
재정수지(A-B)	0.2	0.0	-0.6	-1.4	-2.2	-3.0	-3.7	-4.5	-6.2	-7.7
누적준비금	5.9	5.9	5.4	3.9	1.8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규모는 2023년 109.8만명에서 2030년 160.3만명, 2040년 251.1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7)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

- 둘째, 안마를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여타 재활서비스(접골사, 스포츠마사지 등) 및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여 인정을 요청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장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셋째,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만이 취득 가능한데, 시각장애인인 안마사가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안마를 제공하는 경우 낙상 등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마사 및 수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인 노인등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에는 공감함. 다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안마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질환 및 증상 완화, 신체기능 유지 향상 등에 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임상 데이터 축적 및 효과성 입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안마사 자격부여 체계에 따른 전문성 제고 방안,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장기요양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상 대부분 고령이며 기저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문안마의 안전성 및 효과성, 재정부담 수준(급여제공 기준 및 수가, 재정 추계)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공 주체, 비용부담, 법적 책임 등 여러 쟁점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가 필요함.

□ 대한안마사협회

- 장기요양급여에 방문안마와 시설급여를 추가함으로써 수급자 신체능력을 향상하고 회복을 촉진시켜 요양상태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는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완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다양하게 부여함으로써 향후 장기요양급여의 만족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대한의사협회

- 안마의 의학적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의학적 진단과 평가에 기반한 재활치료와 안마서비스를 동일시할 경우 의료서비스 질, 안전성 및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 효과성, 제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안마의 급여화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대한한의사협회

- 시각장애인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안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보조인력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마업무를 장기요양급여로 인정할 경우,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여 인정을 요청할 우려가 있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노후 건강증진, 노인성 질병 예방·완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필요성 및 취지에 공감함.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양한 재활서비스(접골사, 스포츠마사지 등) 제공 요구가 예상되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연계하여 재활서비스 급여에 포함할 급여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가 대부분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안마사가 방문을 통해 낯선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안마사와 수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또한, 방문안마가 재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실증 데이터나 과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노인 신체기능 향상 및 일상생활 자립을 돕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며, 부분적인 재활서비스 확대가 아닌 장기요양급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